

상황에 알맞은 투자전략

세금까지 내야하는 반토막 펀드, 중도 해약 시 원금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보험 등으로 원금은 줄어가고 자금이 있어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가능하기 어렵지만 상황에 따른 알맞은 투자전략을 알아보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2007년 펀드열풍은 잘못된 학습효과도 남겼다

크게 3가지 경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대수익률 인플레이션이다. 기대수익률이 한 자리수인 투자상품은 요즘 투자자들의 욕구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다. 물론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도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대수익률 버블효과에 있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인데,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버블효과가 생기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 생긴 거품이 빠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돈 씹씹이가 늘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이지만 한 번 늘어난 씹씹이는 어지간해 제 자리를 찾아가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지점 PB팀장

둘째는 투자상품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반응이다. 일부긴 하지만 투자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 몇몇 고객은 적립식펀드조차 손사래를 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꼴이다. 이는 분명히 과잉반응이다. 하지만 투자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게 꼭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보인다. 투자수익의 만족도는 경제적인 면 외에 심리적인 면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마이너스 수익을 감수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손실을 염려하지 않았다가 입는 손실이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큰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택에 훨씬 부담이 되고 그 결과 또한 결정에 대한 책임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손실을 입는다고 가정해 보자. 두 번째 고통만큼 스트레스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셋째는 창구직원에 대한 불신이다. “내가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창구직원 말을 들은 게 잘못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금융권이 소몰이식으로 펀드투자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수익을 위한 제안이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펀드수수료에 집착한 결과기도 하다. 이에 속상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남의 손을 한 번 거치는 펀드대신 직접 투자하여 원본을 찾겠다는 의지다. 앵그리 머니(Angry Money)란 이런 돈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은 뻘한 결과로 정리된다. 확정금리 상품을 편애하거나 더러는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직접 찾아간다. 앵그리 머니는 그렇다 치자, 과연 확정금리상품에는 함정이 없는 것일까. 위험측면에서 보는 확정금리상품과 변동금리(투자형)상품의 차이는 위험발생 확률과 깊이의 정도에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형상품 즉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고 보자.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50%내지 -10% 언저리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많이 회복된 결과다. 누구나 손실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원금이 100%까지 날아가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즉, 손실가능성은 크지만 손실의 깊이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원금 이상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내 주가지수가 회복되면서 상당부분 원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확정금리 상품은 조금 다르다. 확정금리 상품이 손실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한 번 손실을 입으면 그 상처가 매우 깊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확정금리 상품이 손실을 입게 되면 거의 100%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CP(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정기에 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비교적 안전한 CP도 많다. 하지만 정기에금 이자율보다 두 배 이상 기대되는 CP도 상당하다. 수익률은 신용등급에 반비례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만의 하나 원금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100%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펀드투자에 가격위험(주가, 환율, 금리위험 등)이 따른다면 확정금리상품에는 신용위험(발행사 위험 등)이 따른다. 가격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자세가 갖춰져 있다. 순전히 학습효과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 지나친 저금리 현상으로 신용위험이 가려져 있지 않나 염려스럽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일부 확정금리상품, 제2금융권 고액 확정금리상품 그리고 ELS 펀드 등이 그 장본인이다. 수익률보다는 신용도를 먼저 봐야 한다. 특히 ELS 펀드의 경우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발행사의 신용도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고수익펀드라는 것들이 금융위기에 속절 없었던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신용도 낮은 고금리상품이 두 번째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뒀다.

사실 펀드가 이렇게까지 하락으로 빠질 줄은 몰랐었다. 장밋빛 전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액의 수업을 내고서야 금융사와 투자자가 냉정을 찾아가는 느낌이다. 아직 위험인자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번과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주식형 펀드 환매해 볼까?

국내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설레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원금회복 그 이상도 가능하겠으니 말이다. 실제로 어지간한 국내주식형 펀드는 최근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시 주가지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렵잖아 30% 포인트 이상은 회복된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원금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종합주가지수 1천600 포인트 이상에서 가입된 펀드가 72%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단순한 가정 아래 환매 포인트를 잡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격적인 투자자의 경우다. 최근 한국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속도가 빨랐다는 것. 모험 같지만 지금 환매하여 이머징 국가나 원자재, 오일펀드 등에 투자해 볼 수 있다. 국내 환율이 안정적이고 경기회복 신호가 희미하게나마 드리워지면서 원자재와 오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상황은 다르다. 그대로 국내 주식형에 머물거나 확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신용스프레드가 하락되면서 반사적 이익이 기대되는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 어려울 경우 은행권 확정금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오래전에 가입했거나 주가지수가 세 자리수일 때 가입한 경우는 이미 상당부분 차익이 발생한 상태다. 적어도 당분간은 원금손실 염려까지는 필요 없어 보인다. 유동성의 힘이다. 좀 더 여유롭게 결정을 내려도 무난해 보인다. 수익률 상승을 즐기는 것이다.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지기밖에 더하겠는가. 그런 배짱을 가져도 좋다.

펀드 손실나면 세금 안낼 수 있다

오늘 7월부터는 반쪽 펀드가 세금을 내는 기이한 현상이 사라질지 모르겠다. 기획재정부가 모순된 과세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펀드에 대한 과세 방식은 이렇다. 국내의 구분 없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환차익, 배당수익 등 주식매매차익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따라서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이 주식매매차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수익이 커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그러나 환차익이 포함될 수 있는 해외투자펀드의 경우는 다르다. 주식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환차익이 포함돼 있으면 주식매매차손에 대해서는 비과세,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가 되는 셈이다. 손에 쥐는 것은 없는데 세금을 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은 바

로 이런 과세구조 때문이다.

손실은 환매할 때 평가되지만 환차익 여부는 매년 결산기(펀드 설정일)에 평가된다. 따라서 매년 결산기(펀드 설정일)에 환차익이 난 상태로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지고, 환매할 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 번 정해진 과표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과세시기가 결산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바뀐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과세시기를 결산기 또는 환매할 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과세시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펀드별로 운용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형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달리 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유동성장에도 서민은 서럽다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려 있다. 돈이 돌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이지만 염려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굳이 경제학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서민에게 부담이 더 크기 마련이다. 공공요금 같은 생활물가는 물론 진짜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다.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쏟아 부은 재정지출은 비록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지만 오히려 재미를 보는 쪽은 자산가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보면 경기가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서러운 쪽은 서민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러워서 서민인지 모르겠다. 경기침체로 더 어려워지는 쪽도 서민이고 깨진 펀드를 매울 기회가 없는 쪽도 서민이다. 물론 부자라고 펀드 손실에서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살아만 놓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구조다.

서민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오래전에 들어 놓은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금도 마찬가지다. 잘 아는 것처럼 적금을 중도 해약할 경우 내가 부은 원금은 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쌓여있을 이자만 포기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은 다르다. 중도 해약할 경우 원금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한다. 고객불만이 생기는 이유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아니 고객을 경기침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직 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주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연체이자 없이 부활시켜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혹 보험을 중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나의 보험계약에 어떤 서비스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만능 청약저축 해볼 만하다

새로 생긴 청약저축이 300만 계좌를 넘고 있다. 5개 은행의 치열한 경쟁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율과 청약조건이 좋은 이유도 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청약저축은 청약기능이 있는 자유적금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2년 이상일 경우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약이 주기능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가기능이 될 수도 있다. 붓다가 해지하면 자유저축이 되는 것이고 청약을 위해 장기전에 돌입하면 청약통장이 되는 것이다. 주택 유무는 물론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

P B 상담 석

만 없으면 된다. 사실 300만좌 안에는 미성년자 고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훗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 1순위를 확보해 주자는 전략이다. 물론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굳이 번거로운 청약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을 볼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면 긴요하게 활용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년 20년 후 주택시장을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최소 2만 원 이상이면 통장 신규가 가능하다. 저축목적이라면 50만 원씩 붓는 게 유리하고 청약목적이라면 많은 월부금은 필요하지 않다. 매월 2만 원씩 2년을 순차적으로 부어나가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큰 금액을 붓다가도 필요금액 이상이다 싶으면 금액조정도 가능하다. 기존의 청약통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대상 평형선택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청약당시에 해당 평형 기준금액에 맞게 추가납입하면 된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우리, 하나, 신한, 농협 5개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가능(연령, 자격제한 없음)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 저축금액 : 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천500만 원에 도달시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청약대상주택 : 모든 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자격 순위 (1순위)
 - ▷ 국민주택 : 2년 경과, 매월 약정일에 월저축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계좌
 - ▷ 민영주택 :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한 계좌
- 증여세 과세가액 면제 : 미성년자 1천500만 원까지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0년간 사전증여재산 합산운용
- 적용이율(금융기관 동일)

가입기간	1개월 미만	1개월~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이율	없음	연 2.5%	연 3.5%	연 4.5%

※ 관계법령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변동일 기준으로 구분 계산됨 **금융**

